

# 「국민체력100」 군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센터업무협약서

진천군과 진천군체육회는 「국민체력100」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질 높은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천군체력인증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, 업무의 연계, 사업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약내용)

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가. 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계협력
- 나. 체력인증센터 운영 시 홍보 및 대상자 연계
- 다. 체력인증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협력
- 라. 정보 공유 및 시설, 운영자료 등 활동인프라 교류
- 마.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

## 제3조(협약의 준수 및 양도금지)

- 가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상호 신의·성실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나.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## 제4조(업무진행 방법)

- 가. 이 협약상의 업무진행 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나.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 선정 및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5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제6조(협약의 효력)

- 가.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나.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의 당사자가 서명 ·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5월 20일



진천군

진천군수 송기섭



진천군체육회

회장 김명식

송기섭

김명식